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16 선고 2023가단40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12.

판 결 선 고 2024. 4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4,164㎡ 지상 조적조 단층 무허가 주택1동 47.04㎡, 조적조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24.0㎡, 조립식판넬 단층 무허가 주택 1동 18.0㎡, 각파이프 단층 무허가 주택(가림막) 1동 6.45㎡를 각 철거하고, 그 토지 4,164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1부터 갑3,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, 피고는 원고 소유인 주문 토지 위에 있는 주문 각 무허가 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행사하던 중, 2022. 4. 28. 무렵 원고에게 퇴거 및 철거를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.

판사 박이규